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2. 11 선고 2020가단1199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원

변 론 종 결 2021. 11. 12.

판 결 선 고 2022. 2. 11.

주 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8,8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8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값은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폐모터 처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C은 ‘E’이라는 상호로 폐모터 분리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E의 사업자등록은 피고 B 명의로 되어 있으며, 피고들은 형제 관계이다.

나. 원고와 피고 C은 2018. 8.경 원고가 폐모터 또는 폐모터 구입자금을 피고 C에게 제공하면, 피고 C이 폐모터를 고철로 분리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E에 지급한 돈, E으로부터 제공받은 고철 내역, E에 공급한 폐모터 내역을 수기로 기재한 기록을 합하여, 두 쪽의 문서(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 장부’라 한다)로 정리하였다. 피고 C은 2018. 12. 11. 원고에게 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최종 금액이 38,826,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거래내역 장부에 서명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1. 5. 피고 C을 횡령으로 고소하였고, 경찰은 2021. 2. 1. “피고 C이 원고로부터 68,596,30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아 38,826,000원의 금액이 남아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C은 잔금이 있는 것은 정산과정에서 일부만 변제하고 일부는 다시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민사문제가 될 수 있음은 별론, 횡령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 없음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 13,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폐고철을 납품하지 않아 피고들에게 준

선금금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금액 38,826,000원에 대하여 피고 C의 서명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설령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 B는 위 돈에 대하여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나 민법 제125조에 따른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일방적인 의무 불이행으로 거래 중단되었을 뿐이고,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일 뿐이다. 피고 B는 피고 C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영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어떠한 지급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과 함께 위 각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12. 11. 이후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피고 C이 2018. 12.경부터 2019. 10.경까지 형사사건으로 수감되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불가능하였던 점, ③ 피고 C은 수사기관에서 2018. 12. 11.자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다른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을 테니 철을 원활히 공급해 줄 수 있을 때 말을 해주면 다시 거래를 하겠다”라고 고소인과 합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2018. 12. 11.경 원고와 피고 C의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돈 중 고철 공급 등을 통해 이미 정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 C이 확인 후 서명한 이 사건 거래내역 장부 기재 38,826,000원을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으로 인정한다.

- ① 이 사건 거래내역 장부는 원고가 피고 C와 거래하면서 그때그때 작성한 수기 장부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고, 거래내역 중 선수금, 선금 등 명목으로 기재된 부분은 객관적인 송금내역으로 뒷받침된다. 이 사건 거래내역 장부는 원고가 실제로 피고 C에게 송금한 돈에서 부가가치세 명목의 돈을 공제한 금액을 기재하거나(즉, 실제 송금한 돈을 1.1로 나누어 더 적은 금액을 기재함), 명확한 송금내역이 있는 내역을 기재하지 않는 등(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해당 금원 상당의 고철을 즉시 입고 받아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객관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 ② 이 사건 거래내역 장부 중 2018. 10. 14.자 ‘기계 및 현금 1,700,000원’을 뒷받침하는 송금내역은 없으나, 현금을 교부할 경우 송금내역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이 사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원고의 사업 규모에 비추어 1,700,000원 정도의 현금을 즉석에서 교부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C은 ‘기계 및 현금 1,700,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의 이 사건 거래내역 장부에 서명하였다.
- ③ 이 사건 거래내역 장부 중 작업철 명목으로 기재된 부분은 원고가 피고 C에게 공급한 폐모터 금액을 기재한 것인데, 피고 C은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수량 상당의 폐모터를 공급받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폐모터를 공급할 무렵 그보다 많은 수량의 폐모터를 구입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영수증 등이 서증으로 제출되었다.
- ④ 피고 C은 최초 선수금 20,000,000원은 원고가 피고 C에게 폐모터 분리에 필요한 설비를 구입하라며 준 돈이고, 2018. 9. 29.자 선금 12,002,100원, 2018. 10. 11.자 선수금 8,160,000원, 2018. 11. 18.자 선수금 8,910,000원도 피고 C에게 인부들 노임 명목으로 지급된 돈으로, 모두 원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은 수사기관에서 위 20,000,000원에 대하여 ‘금방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소인에게 투자받았던 금액’이라고 진술하여 위 20,000,000원도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원임을 전제로 진술하였으며, 각 선금 및 선수금에 대하여는 정산금액 및 고철구입대금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노임을 보전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없다. 피고가 지출해야 할 E의 노임 등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고, 피고 C이 해당 금원 상당의 노임을 부담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B가 당사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표현대리 주장 포함)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B가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합의로 해지된 후 금전 반환 등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등을 피고 C에게만 발송하고, 피고 B에게 연락한 자료는 전혀 없는 점, 피고 C만 횡령으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B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38,8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합의로 해지된 날 이후로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정연희